

# 세계건설시장 진입장벽 및 규제 현황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투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세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 ■시장규모와 개방도

### [1] 세계건설시장 규모

EU(유럽연합)출범 등의 영향으로 유럽건설시장이 대폭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꾸준하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건설투자액기준으로 93년 현재 2조 7,785억 달러이며 일본의 건설시장이 6,614억 달러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다. 미국은 5,108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의 건설시장이다.

개도권 지역은 5,959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1%,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3,144억 달러로 전체의 11.3%에 불과해 미국과일본

지역별 시설투자 규모

지역 \ 년도	90	91	92	93
북미 [미국]	5,247 (4,487)	5,205 (4,483)	5,597 (4,837)	5,908 (5,108)
유럽 (동독)	9,175 (2,128)	9,050 (1,905)	9,127 (1,796)	9,303 (1,775)
아시아 (일본)	7,995 (5,711)	8,388 (5,843)	8,993 (6,158)	9,758 (6,614)
중동	839	831	911	955
아프리카	498	523	539	564
중남미	972	1,042	1,149	1,296
합계	24,727	25,080	26,317	27,785

자료: UN,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UN, Construction Statistics Yearbook



등 선진국 건설시장의 규모가 세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2] 세계시장의 해외발주규모**

세계시장의 해외발주규모는 92년 현재 1,465억 달러로 아시아지역은 아세안 5개국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확대에 힘입어 해외발주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럽지역도 EU(유럽연합)출범 등에 따른 역내 건설교역 활발로 발주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동지역은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발주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UR타결 등에 따른 세계건설시장의 여건변화로 해외발주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해외발주추이

	1985	1988	1990	1991	1992
북미 (미국)	102 (73)	192 (127)	217 (153)	190 (124)	123 (90)
유럽	100	194	305	328	344
아시아	178	205	271	345	426
중동	216	174	199	293	281
아프리카	153	101	152	217	145
중남미	66	75	58	147	137
합계	816	941	1,203	1,520	1,465

자료: ENR지 각호

**[3] 세계건설시장의 해외개발도는 각 지역별 해외건설 발주액을 건설투자액으로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1) 선진국 건설시장 개방도**

일본의 경우는 해외발주가 거의 없는 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건설시장이며 미국은 92년 현재 1.9%, 유럽과 북미지역은 4% 미만으로 선진국의 건설시장 개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개도권 건설시장 개방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건설시장과 북아프리카의 산유국이 포함된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개방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중동건

설시장 개방도가 30%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개방도의 수치**

개방도의 수치는 전체 해외발주액이 아닌 세계 250대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건설발주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절대치보다는 상대치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건설시장의 개방도

	1985	1988	1990	1991	1992
북미 (미국)	2.3 (1.8)	3.7 (2.9)	4.1 (3.4)	3.7 (2.8)	2.4 (1.9)
유럽	3.1	3.0	4.3	3.6	3.8
아시아	5.4	3.0	3.5	4.1	4.7
중동	30.8	22.5	23.7	35.3	30.8
아프리카	37.9	21.5	30.5	41.5	26.9
중남미	9.0	7.3	6.0	14.1	11.9
세계전체	6.3	4.6	5.4	6.7	5.6

**■ 진출지역별 장벽 및 규제**

**[1] 선진국**

가) 미국

**① 건설업 면허**

각 주별로 면허청(State Contractor Licence Board)에서 발급하는 건설업자면허 또는 등록을 취득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각 주의 법규와 관행에 따라 결정되며 발급요건이 각 주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운데 동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외국기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관할은 미국 상무성에서 한다.

South Carolina주같이 해당 주에서 외국업체에게 도급한도제를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California주같이 면허자격요건에 순자산1,000만 달러 이상과 당해 업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② 입찰제도**

공공공사 입찰시 사전자격심사(PQ)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자격심사는 연방

조달청 공사에서 하는데 시공경험, 기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시공경험이 없는 외국업체는 매우 불리하다.

주 정부의 경우 재정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시해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공사금액의 1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명도가 낮은 현지진출 외국업체의 경우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방공사 발주시 공사금액의 100%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Surety Bond 발급을 요구하고, 발급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사수행실적을 미국내 실적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한국업체의 경우 시공실적이 미미하고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소규모이므로 본드발급받기가 어렵다. 본드 발급기관은 보험회사나 보증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 ③정부의 제한적 관행

(미국인 우대정책)

84년 10월부터 미연방 정부 및 미군 발주공사가 적용되며, 500만 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미국업체에게 20%의 입찰금액상 혜택을 부여한다.

아국업체가 동 APP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내 현지법인설립, 2년 이상법인세 납부실적, 주요 관리직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이와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연방정부의 판정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다.

(미국물자 우선구매정책)

현지고용이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취업을 규제하고 공사소요인력 고용시 현지 노동청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관리직 및 기술직 등 전문직종 이외에는 취업비자 발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외국인력진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내 현지법인이라도 상시 고용인의 50% 이상은 미국인이어야 하며, 노조의 영향력이 커서 정부 및 공공기관 공사에 대해 Non-Union업체 및 외국업체가 수주를 못하

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장비반입 규제)

준설선의 경우 미국 시민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나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장비의 반입을 허가하고 일반공사용 중장비 경우도 미국산이 아니면 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수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기술사 자격제한)

전기 및 기계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해당주의 등록청에 그 분야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로서 등록해야 하고, PE의 자격시험 요건은 실무경력 6년으로서 필요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도급 제도)

계약의 상당 부분을 소규모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므로 원청자는 시공조건이 허용하는 한 하청업자로서 소규모업체를 사용해야 하고 50만 달러 이상의 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등 전액의 하청을 금지하고 있다.

## 나) 일본

### ①건설업 면허

면허발급 소요기간이 불확실하고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전문기술자, 도급계약에 관한 성실성, 재산적 기초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소의 구역수에 따라 허가권자가 상이하도. 또한 건설업면허 신청시 일본의 건설대신(建設大臣) 인정절차(特認)가 필요한데, 특인신청대표자(일본 지점장)의 변경에 따라 재신청시 소요기간이 수개월 걸리고 건설업 특인신청자는 일본내 상주를 해야하고 플랜트 공사의 경우 기계, 전기기술자는 특인이 인정안된다.

### ②입찰참가 자격 제한

공공공사의 경우 도급한도액이 적용되는태 경영상태, 공사실적, 공사안전성 등과 같은 사항이 종합 평가되어 등급이 결정되며 각 관공서별로 업자등록 및 관련서류의 보완요구 등



으로 적기(適期)서류제출에 애로사항이 많다.

도급한도범위가 공사실적 등에 의한 등급제로 되어 있어 외국업체의 경우 해외공사 실적의 불인정으로 낮은 등급이 적용되고 한국업체에게는 92년 7월부터 제3국의 공사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최하위도급한도액 범위에 해당되어 불리하다.

94년 4월부터 공공공사에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도입, 참가자격으로 ①경영사항 ②시공체제의 확보 ③기술적 사항 등의 요건을 심사하며 현행 지명입찰 방식을 공모형으로 전환했다.

사전자격 심사제도는 자격심사시 발주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지명입찰을 공모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종적인 지명권한은 발주자가 갖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영사항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방건설국의 일반경쟁참가자격을 인정(공종별 등급 구분)받아야 하고, 본점(지점)또는 영업소 소재지 등에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공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공사와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대외협력기금(OECF)자금으로 제3국에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찰인 타국업체에 배제하고 일본업체에게 낙찰시키는 사례가 많다.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시 유자격자의 사전등록 및 시기가 제한(통상 2년마다 1회)되어 있고 지방자치체로 건설행정이 상이하여 현지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

영어를 인정하지 않고, 외국도면의 일본기술자 sign의무등 국제화가 되지 못했으며 일본자재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철골구조재의 경우 철골 생산공장 전체의 일본 JIS규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산 전자재의 JIS획득은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협력체제가 조직화되어 있어 수의계약제도가 횡행하며

정부기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구실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일본업체간의 담합 또는 기업과 정부기관간의 유착이 심하다.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시공감리를 위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건설대신(建設大臣)이나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실시하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의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는 특인에 의해 시험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나 자격의 판정시 외국인 건축사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③노동력 이동 규제

관리직 이외에는 취업비자 발급을 규제함으로써 노동인력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수생 훈련 목적으로 기술인력의 입국은 허용하나 90년6월부터 사용자 처벌법 시행으로 외국 기능인력의 입국이 불허되었으며 외국노동력이 인정되는 분야는 일본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④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분할발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해외프로젝트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리스크부담에 따른 입찰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합병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 다) EU(유럽연합)

①공공건설시장 단일화와 관련, EU역 내 참가절차 및 기준제정(EU역 내500만 ECU 이상의 공공건설계약에 적용)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발주기관의 입찰계약방식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방식(사유설명)중 어느 것이라고 택일이 가능하며 비회원국은 정부발주공사 계약시 금액의 50%이상을 EU인력고용 및 하도급계약에 사용해야 한다.

②EU기업이 특정 제3국의 정부조달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3국 기업의 EU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상호주의(相互主義)조항을 적용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금액의 50%이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EU정부조달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EU역외기업의 응찰참가자격이 역내기업보다 3%이상 저렴하지 못할 경우 EU역내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에너지, 용수, 수송, 통신, 용역 구매 분야에서는 EU기업에 3%특혜를 부여하고 50%의 현지부품조달 조항을 적용한다.

EU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약 5,300억 ECU(약 4,50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나, 동 시장에서의 외국업체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③정부조달지침에서는 입찰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외국 기업들이 응찰하는데 상당히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다.

④EU는 면허제도와 같은 건설업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으나 민간건설단체가 발달하여 이들이 입찰규정 등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기술규격

EU의 기술수준(건축물, 토목시설의 구조 등)이 설정되어 있을때 예는 그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EU에서 사용 또는 추진하고 있는 유럽규격, 인증, 기술명세서 사용은 원칙적으로 하고 EU차원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회원국의 규격, 인증, 기술명세서 등을 적용한다.

⑥건축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지침서

- 건축사는 EU회원국의 국적보유
- 대학졸업장 보유
- 2년 이상 인정된 건축공사 경험 등

⑦건설자재

건설자재에 대한 EU기준을 제정하고 동 기준에 합격한 건설자재는 EU마크 부착을 의무화해야 하며 EU마크를 부착한 건설자재에 한해 EU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판매와 사용 등이 보장된다.

⑧인력이동

노동자와 전문직의 EU회원국간 상호 자유로운 이동(EU회원국에 한해 건축사자격 및 학위의 상호인정)을 허용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으며 비회원국의 엔지니어는 사업하고자 하는 EU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 광

①면허제도

외국업체의 경우 광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광자치정부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업체는 미연방정부 시행의 군기지 관련공사에도 유효하다.

미연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군기지 관련공사의 경우 광의 현지업체에게 20%의 입찰금액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단,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자국업체와 동등자격을 부여하며 공사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정부의 차별적 구매

광자치정부 시행 공사중 연방정부기금이 지원된 공사인 경우엔 미곡물자 우선구매법(Auy American Act)이 적용되지만(BAA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재에 적용됨)계약서상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 특정한 자재의 경우엔 적용이 제외된다.

③노동력 이동

지금까지는 건설분야에서의 자국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용이한 편이나 미연방정부가 발주하는 군기지공사의 경우엔 외국인 임시계약 근로자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광자치정부공사 발주시 자국내에 해당 직종의 유희인력(실직자)이 있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이 거부된다.



**④국내공급요건**

공사용 자재의 해상운송시 자국선반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자국 선반이용이 시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이용료가 과다하게 고가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건설공사용 외국산 중장비 반입시 덤프 및 트럭의 경우 관행상 선별적으로 반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공로상(公路上)을 운행하는 덤프 트럭과 타이어 모빌크레인(Tre Mobile Crane)등 고무바퀴달린 중장비에 대하여 미국의 엔진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므로 미국 제품외의 제품의 반입이 불가하다.

**마) 캐나다**

**①면허 및 입찰제도**

각 주별로 건설면허 취득 요건이 상이하다. 건설업 허가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건설회사 설립지역 주정부와 건설업 면허 취득여부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 퀘벡주는 건설업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건설턴트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하려면, 컨설팅 엔지니어는 법적등록을 요하며 주법에 따라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어야한다. PE(Professional Engineering)는 각 주의 직업법에 의해 PE협회가 자격을 인정하며 실무경력 6년 이상 및 대학 졸업후 2년을 PE지도 아래 경험을 얻어야 한다.

입찰제도로는 입찰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며 보증금액은 각 주별로 상이하다. 또한 소유주의 PQ심사가 가능하다.

**②정부의 차별적 구매**

GATT정부조달규정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캐나다産물품에 대해 10%의 가격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조달규모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연방 및 주정부기관들도 일반적으로 자국산 구매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국기업을 우대하는 체제에 의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입찰에 초청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연방사회법에 의해 외자계(外資系)기

업 임원의 과반수는 캐나다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바) 멕시코**

**①입찰제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응찰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획 재무성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입찰시행기관은 등록된 입찰 희망자중 적격업자를 1차로 선정해 응찰자격(지명경쟁)을 부여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의 기간은 약40일 정도이고 입찰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기재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일반적이며 특별한 경우 대안입찰제를 채택한다.

PEMEX 및 전력청 공사 등 정부발주공사는 현지 자금인 경우 대개 국내 입찰이다. 국제입찰의 경우도 발주처에 대한 로비(Lobby)가 작용되며, 사기업의 발주공사인 경우 대부분 공개입찰보다는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응찰가격의 제한으로 대형 외국공사의 경우 주로 외국계 은행,미주개발 은행등 차관선에 따라 시공업체가 결정된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 적으며 경쟁입찰이라도 사전정보유출로 인한 부조리가 심하며 건축과 도로·교량산업 등은 외자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건설업은 외국인 투자 Majority 허용범위(외국인 투자비중 49%-100%)에 속해 있다.

**②노동력**

현지인의 고용에 따른 규제가 과다하다.

현지인을 80-95%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현지인의 고용비율을 1:9로 제한하고 있다.

현지인 고용시 멕시코사회보장협회(IM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분담금의 75%를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주택기금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총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 국내에 기술자 및 전문가가 없는 분

야에는 그 분야의 10%를 한도로 임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 및 외국인 기술자는 멕시코인 기술자를 양성할 의무가 있다.

### ③정부의 제한적 관행

입찰서 심의시 멕시코산 구매분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되며,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자국업체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상적인 회사운영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워 과도한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한구역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해안에서 50km 이내 및 국경에서 100km이내)하

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요 또는 신탁시 외무부의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토목부분 건설회사 참여지분을 49%로 제한(단, 99년부터 자유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 ④기타

공사계약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스페인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지급보증의 과다징구로 실질공사 참여에 애로가 많으며 경기변동과 인플레이 형상이 심하다.

※ 다음호에 아시아, 북방지역, 중동지역 편이 이어집니다.

## 일본,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 착수

**일본** 건설성은 오는 96년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건설업의 국제화가 일본 건설산업체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책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성은 건설업의 현재상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 내년 3월 「신건설산업정책대망」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성은 □일본 국내기업의 해외활동 동향 □외국기업의 국내시장참여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책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 기존데이터 정리·분석 및 해외실태조사,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성은 일본내 건설산업의 중장기계획 마련은 건설업이 국제화추세에 있고, 특히 일

본의 공공건설시장은 지난 4월에 체결된 GATT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오는 96년부터 협정가맹국에 건설시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성도 GATT 정부조달협정의 비준에 따라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일본의 건설시장은 다른나라에 비해 건설 투자액이 많아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업체들이 강력한 진출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추세이다.

이로인해 일본 국내기업과의 경쟁심화와 새로운 협력체계생성으로 건설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검토위원회는 일본시장 진출의욕을 보이고 있는 각 나라별 건설업현황 및 국내시장의 동